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 ⑨ 제8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25조에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⑧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모집, 신용카드

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⑨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①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했 정 아 혀 개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 록기준 등) ① ~ ⑦ (생 략) 록기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 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 임 또는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 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 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⑨ 제8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 <신 설> 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 ~ ⑥ (생 략) 유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 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 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 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 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

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 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 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 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⑧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 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

한다.

①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 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 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여신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92	(02)3145-7447